

2002 농림사업 시행지침

2002 농림사업 시행지침이 발표되었다. 이 지침서에는 농림사업실시규정 및 농림사업자금 집행관리기본규정에 대한 해설, 사업별 주요변경사항 및 농림사업 대출안내와 분야별 사업시행지침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에 회원들의 이해를 돕고자 2회에 걸쳐 주요내용을 발췌해 수록한다. - 편집부 -

I 축산물 유통개선사업 (공공)

축산물종합처리장 오리도축.가공장 및 도매시장 운영활성화사업

1. 목 적

○축산물종합처리장(LPC)·오리도축.가공장의 안정적인 원료확보체계 구축을 위한 농가계약 등으로 조기 활성화 및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도모

○IMF영향 및 환율상승 등으로 건설에 소요된 자부담이 과중하여 자금난을 겪고 있는 LPC의 조기활성화를 위한 경영안정자금 지원

○축산물도매시장 공판장의 출하를 원활하게

함으로써 축산농가와 소비자 보호

2. 시책 및 추진방향

○LPC 및 오리도축.가공장의 안정적인 원료육 확보를 위한 계약농가 확보 등으로 운영활성화 도모

- 사업 당해 연도의 가동중 또는 가동예정인 LPC 및 오리도축.가공장에 대하여 지원

○축산물도매시장과 공판장의 출하 활성화를

통한 축산물의 공정한 가격형성 유도

3. 근거법령

○ 축산법 제3조(축산발전 시책의 강구)

4. 연도별 지원계획

(단 위 : 백만원)

구 분		'99까지	2000	2001	2002예산안
합 계	사업량(개소)	9	17	19	23
	사업비	22,533	21,546	26,000	32,673
	- 축발(용자)	22,533	21,546	26,000	32,673
	- 자부담	-	-	-	-
축산물종합처리장 경영안정자금	사업량	2개소	3개소	5개소	6개소
	사업비	15,533	12,979	21,000	22,800
	- 축발(용자)	15,533	12,979	21,000	22,800
	- 자부담	-	-	-	-
축산물도매시장 공판장 출하촉진자금	사업량	7개소	14개소	14개소	14개소
	사업비	7,000	8,576	5,000	7,982
	- 축발(용자)	7,000	8,576	5,000	7,982
	- 자부담	-	-	-	-
오리도축·가공정 원료구매자금	사업량	-	-	-	4개소
	사업비	-	-	-	1,891
	- 축발(용자)	-	-	-	1,891
	- 자부담	-	-	-	-

5. 2002년도 사업시행요령

가. 사업추진체계

○ 사업주관 : 시·도지사

○ 사업담당 부서

- 농림부 : 축산물유통과

- 시·도 : 축산물유통 담당과(축산과, 농정

과 등)

나. 사업내용

[축산물종합처리장(LPC) 및 오리도축·가공장
운영활성화자금]

1) 2002년 지원계획

○ LPC : 22,800백만원(연리 5%, 1년 거치 일
시상환)

- 대규모 LPC 경영안정자금: 3개
소 15,000백만원(개소당 5,000백만원
이내)

- 중규모 LPC 경영안정자금: 3개
소 9,000백만원(개소당 3,000백만원
이내)

* 단, 농산물 수매, 유통수매자금
(농안기금, 돼지부분), 규격 돈 생산
출하촉진자금 등을 기 지원 받았을
경우에는 해당 액만큼은 2중 지원

방지차원에서 감한 후 지원

○ 오리도축·가공장 : 1,891백만원(연리 5%,
1년거치 일시상환)

2) 지원대상

○ 정부 사업계획에 의하여 정책자금을 지원
받아 건설 운영중인 LPC 및 오리 도축·가공
장

정책

- 경매 등으로 인수한 LPC 포함

○축산발전기금융자에 결격사유가 있는 업체는 제외

○LPC 육가공시설 활용(임차)업체가 원료구매자금 지원 요청시에는 LPC 업체별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원

3) 지원자금의 용도 및 운용

○LPC 및 오리도축·가공장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제반 운영자금으로 사용(자부담 비율을 초과한 건설자금, 고금리 차입금 충당, 원료구매자금 등)

- 원료구매자금 지원기준(월2회전(15일) 소요액)

· 소 : 2,500천원×70%, 돼지 200천원×70%, 오리 5천원×70%

· 구매당시 시세가 축종별 지원단가 이하일 경우 구매가격을 기준으로 함

· 지원단가의 20% 범위내에서 농가 등과의 계약금으로 집행가능

○준공 또는 가동개시후 5년 경과업체에 대한 지원

- 지원액의 50%이상을 원료구매자금으로 집행하여야 함(5년 이내는 30%이상)

○LPC 업체별 평균 가동율이 60%이하일 경우(소.돼지중 높은 쪽 기준) 경영안정자금 지원은 80%이내로 함

- 예 : 대규모 LPC로서 가동율이 60%이하인 경우 지원한도액 : 43억원

- 지원한도는 50억원(경영안정자금 35억원, 원료구매자금 15억원)이나 이중 경영자금 35억원의 80%인 28억원과 원료구매자금 15억원을 합한 금액 43억원이 지원한도액임)

○준공 또는 가동후 5년이상 경과업체에 대하여는 지원한도액의 50% 지원

4) 사업시행

○사업계획서(자금사용계획 등)를 첨부하여 시.도에 신청(별표 1 서식)

○시.도지사는 사업계획서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 후 의견서를 붙여 농림부장관에게 제출

○농림부에서는 사업계획서 검토 후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업체별 경영안정자금 지원

○선정된 사업대상자는 자금집행기관에 용자 신청을 하고 관련 규정에 의거 자금집행

축산물도매시장 공판장 운영활성화자금

1) 2002년 지원계획 : 7,982 백만원

- 연리 5~5.5%(공판장 5%, 도매시장 5.5%), 1년 거치 일시상환
- 2) 지원기준
 - 지원한도액 : 전년도 1일평균 소.돼지 상장 거래금액의 4일분 이내
- 3) 지원대상 및 조건
 -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축산부류 도매시장 공판장으로서 1년 이상 경영실적이 있어야함
 - 계통출하 등을 통한 생축(소, 돼지)을 도축하여 경매의 방법에 의하여 판매 하여야함
 - 도축을 하지 아니하고 지육을 반입하여 경매하거나, 경매실적이 없는 곳 제외
 - 경매와 이용도축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이용도축 부분은 제외
 - 국내산 쇠고기 부분육 상장 경매를 실시하고 도매시장·공판장 우선 지원
 - 수탁품에 대하여 출하자에게 지불하는 대금을 경락일 기준으로 다음 날까지 정산하여 송금 할 수 있는 곳
 - 축산법규정에 의한 축산물등급관정을 실시하여야 하며, 위반사례가 없어야 함
 - 축산발전기금 용자에 결격사유가 있는 업

- 체는 제외
- 4) 지원자금 용도 및 운용
 - 출하약정 선도금 및 경락대금 결제자금으로 사용
 - 준공 5년이내 : 출하약정 선도금 50%이상, 결제자금 50%이내
 - 준공 5년이후 : 지원한도액의 1/2로 하되, 자금사용 비율은 5년이내와 동일
 - * 출하약정선도금 : 소.돼지를 공판장·도매시장으로 출하하여 상장경매코자 하는 생산자단체·농가 등
 - * 경락대금 결제자금 : 수탁품에 대하여 출하자에게 지불하는 경락대금
- 5) 사업시행
 - 사업희망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·도지사에게 제출
 - 사업계획서 포함내용 : 가축출하계획, 축산물 판매(경매) 계획, 도축 및 등급 판정현황, 경락대금 정산방법, 경영수지분석 현황
 - 시·도지사는 사업계획서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의견서를 붙여 농림부장관에게 제출
 - 농림부장관은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업체별 경영안정자금 배정

정책

○선정된 사업대상자는 자금 집행기관에 용자 신청을 하고 촉발기금 운영규정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자금집행

다. 행정사항

1) 대출심사 및 대출실시

○대출취급기관 : 농협중앙회(지역축협 포함)

○사업대상자는 지원액 범위 내에서 대출취급기관(관할 농협)에 대출신청

- 지역 축협에 신청 시에는 도 지역 본부와 사전협의

○대출취급기관에서는 대출신청 접수 즉시 건별로 정책자금대출관련규정 및 여신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하여 대출실시

2) 사후관리

○사업주관기관(시.도) 책임 하에 사후 관리

- 사업추진 상황을 분기별 1회 이상 점검 실시

○사후 관리 중 실시요령을 위배한 경우에는 즉시 기한을 정하여 시정조치하고 기한 내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원자금을 회수조치하고 농림부장관에게 보고

○원료구매자금 및 출하약정선도금 등의 집행에 필요한 계약서는 업체자율 서식에 의거

체결토록 함.

3) 기타사항

○보고(시·도 → 농림부)

- 사업 신청서 제출 : 2002. 2월말(2001년도 자금운용업체는 6월말까지)

- 사업추진현황(실적)보고 : 매분기 실적을 분기익월 10일 이내에 보고[별표2]

○대출취급기관은 대출실행 내역을 대출 실행즉시 관할 시.도지사에게 통보

○시.도지사는 대출실행 내역을 대출 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농림부장관에게 보고

4) 경과조치

○축통51540-290(2001.5.30)호에 의한 운영지침은 본 지침 시행일로부터 폐지한다.

○본 지침 시행전 운용중인 자금에 대하여는 시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본 지침에 따라 운용한다.

6. 2003년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안내

○2002년 사업시행요령에 준함

오리, 말 도축 가공시설 설치사업

1. 목 적

○오리,말의 위생적인 도축, 가공으로 소비자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오리고기 공급

○품질의 차별화 된 오리,말고기 생산으로 사육농가 소득향상과 경쟁력 확보

2. 시책 및 추진방향

○위생적인 오리,말고기 유통을 위한 도축 가공시설 설치로 양축 농가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유통체계 확립

- 오리,말고기의 가공 및 저장기능 보완으로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기여

- 오리,말고기 가공제품 개발로 수출 등 신규 수요창출 확대 및 수입대체를 통한 외화절감 도모

3. 근거법령 : 축산법 제3조, 제39조, 제 57조, 축산물가공처리법 제 40조 등

4. 연도별 지원계획

*()내서는 계속사업임.

(단위:백만원)

구 분	1999까지	2000	2001	2002(예산안)	계
사업량	-	2개소	4(2)	6	10
사업비	-	5,610	16,666	7,500	29,776
-축발	-	4,000	13,653	6,000	23,653
보 조	-	-	-	-	-
용 자	-	4,000	13,653	6,000	23,653
-지방비	-	-	-	-	-
-자부담	-	1,610	3,013	1,500	6,123

5. 2002년 사업시행요령

가. 사업내용

1) 지원대상

○오리의 생산, 도축 가공 및 판매에 이르는 계열화사업 추진이 가능한 자로서 오리 도축장 경영자 또는 생산자단체로서 사업자로 선정되어 추진 중인 사업자

○제주도에서 말고기 가공업을 하고자 하는 자

2) 사업기간 : 2002.1~2002.12월(1년)

3) 사업내용

○재원 : 축산발전기금

○자금용도 : 도축시설(말은 제외), 저장보관 시설·가공시설, 오·폐수시설 등을 위한 시설 설치 및 기계·장비구입비 등(부지매입비 제

정책

외)

○사업비 : 개소당 1,250백만원(용자10억원

이내)

○세부 사업별 지원기준

- 오리 도축시설 : 용자 80%, 자부담 20%

- 말고기 가공시설 : 용자 70%, 자담 30%

- 오·폐수 처리시설 : 용자 100%

* 용자조건 : 연리 5%, 5년거치 10년균분상

환

4) 2002년도 사업지원계획

※ 제주도는 말고기 가공시설임. (단위 : 개소)

구분	계	경기	강원	충북	충남	전북	전남	경북	경남	제주
계	6	1	-	1	1	-	-	1	1	1

나. 사업 추진체계

1) 사업 주관기관 : 시·도지사

2) 사업 담당부서

○농림부 : 축산물유통과(02-500-2691~2)

○시·도 : 축산물유통담당과(축산과, 농정과

등)

3) 사업시행절차

○사업을 희망하는 자는 사업계획서(별첨)를 작성하여 시·도에 제출

○시·도지사는 2002년도 시·도별 지원계획에 의거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세부사업계획서를

검토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'02.1월말까지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

○농림부장관은 시·도지사의 대상자 선정보고서를 검토하여 승인

○세부사업계획서에는 사업개요, 추진계획(일정), 원료확보 판매망확보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(시·도지사는 필요시 추가자료 보완 지시)

○사업시행은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시공업체와 입찰 등의 공정한 방법으로 시행

- 토목 및 건축공사는 경쟁입찰(공사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)을 통하여 시공업자 선정을 투명성 있게 추진

- 장비기계구입을 제외한 토목 및 건축공사 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 자가 시공을 제한하고,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시공업체와의 계약으로 사업시행

- 시공업체 선정·계약 관련한 응찰 및 낙찰업체 공개 등을 지도·감독

- 계약서 및 자금집행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비치할 것

- 1개 사업이 2~5개로 분리 계약될 경우(공

정에 따라 분리될 경우) 선정시공업체와 금액을 공개하고 시·군관계관이 공사실적 확인

- 공사 감리업체를 지정하여 감리 실시

○자금집행은 시·도지사의 기성고 확인에 의거 농협중앙회에서 집행

- 자금집행 관련 증빙자료는 세금계산서를 비치하여야 함.

- 기타 자금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(법률 제5454호) 농림사업실시규정 및 축산발전기금운영규정(농림부훈령 제999호; '99.9.8)에 따름

4) 사업계획의 변경

○사업규모조정 등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시·도지사는 검토 의견을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승인 요청

- 기본계획하에서 총사업비내의 세부내역 변경은 시·도지사가 검토 승인

다. 행정사항

○시·도지사는 사업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계획대로 추진여부를 확인

○시·도지사는 분기별 추진실적 점검결과를 분기익월 10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

○시·도지사는 사업완료 후 20일 이내에 농림부장관에게 사업완료 보고서 제출

- 사업완료 보고서 및 정산결과서(사진 첨부 등)를 첨부

○시·도지사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기성고 확인 등 사업추진에 관한 행정업무를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)에게 대행토록 할 수 있음

6. 2003년 사업신청 및 대상자

선정안내

○추가사업 시행계획 없음

II 농 · 축산경영자금 지원 (공공)

1. 목적

○정부가 농업인에게 농업경영비의 일부를 저리로 지원함으로써 농 · 축산농가의 농업경영을 원활하게 하고 농가소득 증대 도모

○재해 농 · 축산농가에게 저리의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경영비부담을 덜어 주어 신속한 재활기반 구축에 기여

2. 시책 및 추진방향

○벼 농사 위주의 농가에 대한 일반농업경영자금 지원

○과수, 채소, 잠업, 원예 등 특작농가에 대한 전문농업경영자금 지원

○부업규모의 축산농가에 대한 일반축산경영자금 지원

○재해 농 · 축산농가에 대한 재해대책자금 지원

3. 근거법령

○농업농촌기본법 제4조 및 축산법 제3조

○농업경영자금운용요령(농림부 훈령 제1080호)

4. 연도별 지원실적 및 계획

	'98	'99	2000	2001	2002
총 지원규모	44,700	44,700	44,700	44,700	38,310
재특회계예산	4,233	640	990	1,300	2,133

5. 2002년도 사업시행요령

〈사업개요〉

가. 자금별 사업내용

①일반축산경영자금

- 지원대상 : 부업규모 축산농가 및 농업경영종합자금을 지원받지 않은 준·전업 축산농가

- 자금용도 : 사료구입비, 동물약품비등 축산경영비

- 지원대상 축산규모 : 아래규모의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부업규모의 축산농가

· 한(육)우·젓소 : 30두 미만, 단, 한우의 번식우 및 말은 20두 미만

· 돼지 : 500두 미만, 닭 : 1만수 미만, 기타 가축

- 지원금액 : 축산농가당 사육두수에 따라 10백만원이내(대출잔액 기준)

구분	5백만원이내	10백만원이내
한(육)우·말	10두미만	10두이상
젓소	20두미만	20두이상
돼지	100두미만	100두이상
닭	7,000수미만	7,000수이상
기타가축	상기 사육두수를 김안 운용	

- 지원조건 : 1년이내(필요한 경우 1년범위 내 연장가능), 연리 5.0%

- 우수농가 우선지원 : 용자협의회 심의·결정시 축산시책에 적극 호응한 우수축산농가에 자금 지원의 우선권 부여

· 가축질병예방 : 구제역 일제소독등 공동 방역 참여, 예방접종실시, 차단방역, 가축수송 차량소독실시, 방역일지기록, 전염병 발생신고 및 검진협조

· 품질개선 : 규격돈 생산출하, 거세축 생산, 종축등록, 우수축 출하

· 부존자원활용 : 초지조성, 사료작물 재배,

벗짚이용, 남은음식물 사료화

· 기 타 : 집유일원화참여, 송아지생산안정 사업 참여, 축산분뇨자원화,

경영장부기록유지, 축사시설현대화 등

② 재해대책경영자금

-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: 농림부장관이 재해대책의 일환으로 상환연기 또는 특별 지원키로 한 재해농가와 그 해당금액

- 지원조건

· 법령에 의한 재해 : 1~2년 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감면

· 법령에 의하지 않은 재해 : 1년이내(필요한 경우 1년범위내 연장가능), 연리 5.0%

<법령에 의하지 않은 재해>

o 지원대상 : 시장·군수가 본 자금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법령(농어업재해대책법 및 자연재해대책법)에 해당하지 않는 자연재해 및 기타사고

- 기타사고의 유형 : 화재, 정전, 붕괴, 도난, 폐사 등

- 기타사고의 경우 고의성 유무를 철저히 조사한 후 선의의 피해자에 한하여 지원대상자로 선정

정책

- 피해율이 30%이상 재해농가 및 법인
- 재해로 인한 농업종합자금을 지원 받은 농가는 지원제외(재해이전에 농업종합자금 또는 농축산경영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에는 지원가능)
- o 지원금액 : 호당 100만원 ~ 5천만원이내
- 지원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하고, 법인의 경우 1억원까지 지원가능
- 호당 지원금액 : 연간경영비의 50%범위내 지원

o 지원대상자 선정방법

- 피해농가가 시장·군수에게 재해대책자금 지원을 요청
- 시장·군수는 지역농·축협 또는 품목조합(축산계)과 공동으로 피해원인과 피해규모 등 피해조사를 실시하여 동 자금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,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, 농협 지역본부장에게 자금지원을 요청
- 농협 지역본부장은 중앙회장에 자금지원 요청
- 농협중앙회장은 재원의 범위내에서 지원액

을 결정, 지역본부장에게 통지하고 농림부에 보고

- 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: 지원 우선순위는 법령에 의한 재해, 지원금액이 적은 농가부터 하되 피해율이 50%이상인 농가 우선지원

나. 2002사업비(예산안)지원계획

※ 예산액은 총지원규모 기준임

※ () 중 농기업경영자금과 전업축산경영자금의 지원규모는 각각 전문농업경영자금과 일반축산경영자금의 지원규모에 포함하되 별도로 관리함

내 용 별	사 업 비					
	계	국 고 용 자			지방비	자부담
		계	용자	보조		
계	38,310이월	38,310	38,310			
• 일반농업경영자금	19,600	19,600	19,600			
• 전문농업경영자금 (농기업 경영자금)	8,700 (2,740)	8,700 (2,740)	8,700 (2,740)			
• 일반축산경영자금 (축산전업 경영자금)	3,600 (420)	3,600 (420)	3,600 (420)			
• 재해대책자금	3,250	3,250	3,250			

< 추진체계 >

가. 사업주관기관 : 농림부 협동조합과(02-500-1697)

나. 사업담당부서 : 농협중앙회

다. 대상자 선정

- 일반/전문농업경영자금은 농가가 마을영농회를 통하여 지역농협과 품목조합(축산계 제외)에 신청하고 조합융자협의회에서 영농여건 등을 감안하여 선정함을 원칙

- 일반축산경영자금은 축산농가가 지역축협과 품목조합(축산계) 또는 축산계장(또는 대의원)에게 신청하고 조합융자협의회에서 대상자 협의조정 또는 선정함을 원칙

- 조합은 관내 축산계장이나 대의원과 협의하여 조합실정에 맞는 읍·면·동 또는 시·군·구 단위 융자협의회를 선택하여 운영

- 융자협의회 구성 및 지원대상자 선정방법 등 세부적인내용은 농협중앙회장이 정하여 시행

라. 사업시행

- 사업계획 수립

- 농림부에서 연간사업별 운영계획을 수립, 농협중앙회에 시달

- 농협중앙회에서 구체적인 용자취급방침을 수립하여 계통조직을 통하여 지역(품목)조합까지 시달

- 지역(품목)조합에서 자체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운영

- 사업비 지원방법

- 농림부에서 사업별·분기별 배정계획을 수립하여 시달하고, 자금소요시기에 따라 자금배정

- 농협중앙회에서 계통조직을 통해 지역별 또는 조합별로 영농여건 및 소요자금을 감안하여 자금 재배정

- 지역(품목)농협에서 영농여건을 감안하여 지원계획 및 배정기준에 따라 농가 및 경영체에 자금배정

6. 사업신청 안내

- 농림부 협동조합과(농축산경영자금, 02-500-1697)

- 농협중앙회 농업금융부(02-397-5988)

- 농협지역본부 농업금융팀

- 농협시·군지부, 지역 농·축협 및 품목조합

- 신청방법 : 일반·전문경영자금은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영농회를 통하여 지역농협과 품목조합에 신청하고, 일반축산경영자금은 지역축협과 품목조합(축산계)에 신청